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14 발의연월일: 2025. 2. 25.

발 의 자:박 정·이기헌·김용태

허 영·박상혁·정성호

김영환 · 정동영 · 김성원

허성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 기금을 설치하고,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규정된 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이고 실제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지난 3년간 집행률이 4%미만에 그치는 등 기금의 용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. 특히 남북 간 교역 및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및 「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(안 제 8조제2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및 「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	제8조(기금의 용도)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용도에 사용한다.			
1. • 2. (생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2의2.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		
	법」에 따른 발전종합계획 및		
	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		
	되는 사업 및 「평화경제특별		
	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		
	법률」에 따른 평화경제특구		
	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		
	부 또는 일부의 지원		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		